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80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김대식 · 김예지 · 이현승
고동진 · 곽규택 · 이만희
김선교 · 서천호 · 서지영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사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포·구속,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사유가 경미하거나 불구속수사 원칙상 구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9조제3항 및 제101조제6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나.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전자장치 부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다. 범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제98조제9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8조제9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98조(보석의 조건)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u>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가.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u> <u>나.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전자장치 부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u> <u>다. 범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u>

